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지시 제 13 호 (70-2012) 1975. 9. 18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사업체수, 생산액, 수출, 고용등의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항상 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자금의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화 조성등 매년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편, 이들의 수주기회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예산회계법 시행령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히 국무총리 훈령 제 29 호 (66. 4. 22) 및 제 85호 (70. 2. 24) 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체적 수의계약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토록 시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재지시하니 귀관하 관계기관에 이를 주지시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시 제 13 호

1975. 9. 18

다
음

- 가. 재무부 장관이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 구매토록 할것.
- 나.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이 아닌 물품이라도 규격 미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할것.
- 다. 부득이 대기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제품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에게 하청토록 할것.
- 라. 각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담당관은 더욱 열의를 가지고 구매 촉진업무를 수행토록 할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11-50), 나 (1-11)